한솔케미칼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일자	2025.09.10
개정 일자	-
개정 번호	Rev.00

[서 문]

한솔케미칼은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 보장,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규범" 이라 함) 은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한솔케미칼과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지지 및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솔케미칼 또는 한솔케미칼이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사의 본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솔케미칼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한솔케미칼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법적 요건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본 문]

1. 노동 및 인권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노예제, 인신매매 등) 을 강요하면 안됩니다.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②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 은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용시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③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 시간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 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RBA 권고 기준에 따라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과 같이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⑥ 차별 금지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의견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협력사는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① 산업 안전

안전 위해요소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엔지니어링/행정적 통제 구현, 예방 정비와 안전 작업 절차 (잠금/차단 장치), 지속적인 산업 안전 교육을 통해 위해요소 제거 등을 포함하는 통제 체계를 파악, 평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비상사태 대응 방안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비상 대책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산업재해 및 질병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산업 위생

통제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협력사는 이를 제거/줄일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사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육체노동

육체노동의 위해요소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 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⑥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⑦ 위생, 식품 및 주거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보관 시설, 식당 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소방/난방/환기시설, 적절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⑧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 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협력사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환경 인허가 취득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예: 대기배출시설 등) 및 등록 사

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또는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③ 유해 물질 관리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④ 고형 폐기물

협력사는 고형 폐기물(유해하지 않은) 을 파악/관리/책임있는 처리/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⑤ 대기 배출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파괴 물질 및 연소부산물은 배출 이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 파악/감시/통제/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대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⑥ 물질 규제

협력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관거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⑧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 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력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①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 상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②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됩니다.

③ 정보 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경영활동/지배구조/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④ 지적재산 보호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솔케미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⑤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한 협력사 및 근로자의 익명성/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⑦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코발트 등) 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생산 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의 요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⑧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고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사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①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위험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과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적/물리적 통제수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개선 목표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보건과 안전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대상/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교육

협력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실시/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⑤ 시정조치 절차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⑥ 문서화 및 기록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합니다.